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월세금 지원이 근거법 제36조의 금융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A 근거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금융청산 제도의 취지는 근로관계 종료시에 당해 근로관계에서 형성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제반금융관계를 조속히 청산하도록 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마련된 것임.

위 입법위지에 비추어보면 금융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외 기타 일체의 금융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

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융이라면 금융청산 보호대상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문의 월세지원금은 전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금융이 아니라, 특정근로자 채용시 해당 근로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임금과는 별도로 사택지원에 갈음하여 월세 지원금을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보여지는 바, 동 금융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금융인 이상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하더라도 같은 법 제36조의 기타 일체의 금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Q 체불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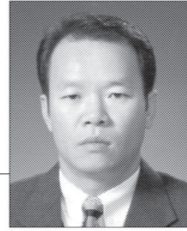
A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융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당해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를 적용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당해 근로자와 합의로 퇴직금의 지급 기일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음. (☎한솔노무사사무소(031-877-7823-2))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멸실된 건물상의 저당권으로 신축된 건물을 경매할 수 있는지】

Q 저는 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갑은 저당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구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乙에게 새로운 고액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건물은 하나 일에도 등기부상은 두 개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지만의 경매로는 제가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수 없으므로, 구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신축건물까지 경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수리함과 동시에 그 일부를 증축한 경우와 같이 기존건물과 현존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현존건물이 다시 보존등기

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등기한 보존등기는 무효인 것이고, 기존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현존건물에도 미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대하여 위 처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그 두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의 물건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고(민법 제186조, 대법원 1980. 11. 11. 80다441), 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건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록 당사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로서 신축된 건물의 등기에 갈음할 의

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니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신축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등기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에서 신축된 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유권 취득을 내세울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10. 26. 75다2211)

그러므로 신축건물과 멸실된 건물이 그대로, 위치, 구조, 기타의 면에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양자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기존건물에 설정되었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지에 대한 저당권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므로 민법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에 의하여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과 함께 신축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귀하는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하여만 저당권 설정당시의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의 경락대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배당요구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요즘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사건을 보면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많이 내려가고 있으며, 지난 달 21일 발생한 대구에서 일어난 집단성폭력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으며, 고학년의 남학생들이 포괄학생과 저학년 학생들에게 성폭행을 강요한 내용이다.

그 사건을 일으켰던 아이들이 포르노를 보고 따라한 것이라고 하는데,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수많은 초중고생이 거의 제재가 없는 인터넷 공유 사이트의 포르노에 노출되어있는 실정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린이들만의 잘못인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 것인가? 포르노가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공유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 포르노가 순식간에 나오고 금방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 제재 없이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는 한 포르노와 같은 불법영상은 근절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며, 근본적인 대안은 가정과 사회, 학

교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알고 올바른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에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되며 자아 정체감이 형성된다고 하지만 포르노를 자주 접하다 보면 잘못된 성관계를 뇌를 차지하게 되고 그것이 성의 전체인 것처럼 오인되어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정체감이 혼란한 시기의 청소년의 경우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현실과의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 보지 않는 것이 좋으며,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성관계란 사랑, 생명, 책임이라는 것이 함께 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남녀평등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성관계의 올바른 성윤리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기·상·식

한전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장 신재우**



Q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무엇입니까?

A 전기요금청구서에 표시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이기금은 전기사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 관련 석탄,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사업, 전기간

전 조사, 연구,홍보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Q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근거와 부과금액은?

A 부담금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대행 징수하며 기금의 운용, 관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그의 위탁을 받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가 수행합니다. 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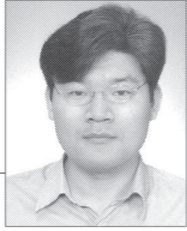
1,000분의 65분위내에서 부과되며 현재 부담금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매월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Q 전기요금과 부담금을 분리하여 납부가 가능한지요?

A 부또한 납부가능한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에 병과하여 부과 징수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7조제3항에 의한 전기사업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부담과중을 이유로 분리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으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031-539-0257)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가정의학과장 김종명**



병방병을 주의하자

병방병은 의학적으로 뚜렷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은 일종의 중후군이다. 병방병은 예언이 가동되는 폐쇄된 발달에 지내는 사람들이 소화불량, 두통, 피곤, 정신집중 곤란 등을 호소하는 것들을 통틀어 일컫는다.

병방병은 병방된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에 인체가 적절히 적응하지 못할 때 생긴다. 여름에 일어나는 병방병은 추운 곳에서 지내다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 아니라 더운 여름환경에 적응되어 있는 우리 몸이 갑자기 더운 곳에서 추운 곳으로 추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이동하여 생기는 생리적 부조화가 원인이 된다. 우리 신체는 외부 온도의 변화에 생리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추운 공기에 노출되면 열의 발산을 억제하기 위해 말초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더운 곳에서는

열을 발산하기 위해 반대로 말초혈관이 확장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신체는 그에 적응하기 위한 생리적 적응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체의 외부 변화에 대한 생리적 적응은 수일에서 수주일에 걸쳐 완전히 적응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낮에 근무 중에는 지속적으로 차가운 공기에 노출이 되다가 퇴근 후 다시 무더운 열기에 노출이 되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신체는 그에 즉시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만성적 피로, 두통, 소화불량, 무력감, 집중력 장애와 같은 병방병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폐기능이상, 관절염, 약자자와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병방병에 취약하다. 여성들은 호르몬 이상으로 월경불순이 나타나기도 한다.

병방병은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과 감별해야 한다. 레지오넬라균은 에어컨 속의 냉각수에서

번식해 에어컨 공기를 통해 번진다. 증상은 고열과 같은 근육통, 두통, 인두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렴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병방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우선 병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병방의 노출시간을 줄이고 실내외의 온도차이를 섭씨 5~8도 내외로 유지하도록 한다. 적정 실내온도는 2도에서 26도 사이에 맞추는 것이 좋다. 그래야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한 신체의 생리적 부적응을 줄일 수가 있다. 또한 한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실내 습도는 절대 금지해야 한다. 또한 키는 낮은 것만 걸고 걸을 때 '무거운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등으로 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병방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

병방병의 발생에는 다양한 체질에서 더욱 잘 발생되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낮이 길어지고, 짧은 밤에도 더위로 인하여 잠을 설치게 되어 생활리듬이 깨지기 쉽다.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 몸의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떨어진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하며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은 가능한 지키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레지오넬라균의 감염을 막기 위해 에어컨을 1-2주마다 정기적으로 청소해주는 것 또한 잊지 말자.

(문의전화 : 539-9182)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장신고로 세금을 절약합시다.】

Q 저는 2007년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세무지식이 없어 정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사에서는 본인 기장에 의거 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꼼꼼히 잘 챙겨 놓고 있습니다.

A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5월 31일까지 전년의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개인별 각각의 소득을 종합하여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모든 사업자는 사실한 장부 기장과 증빙자료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 소기업에 대하여는 국제정에서 소득기준(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고시하여 추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의 소득자에 대하여는 복식기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의무불이행가산세를 본세에 더하여 추가로 부과합니다.

귀하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서류를 성실히 잘 보관하고 계산년도 금년이 최초 사업년도이므로 복식기장이 아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원가계산 및 재고관리 등 복식기장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만일 귀하가 처음으로 사업을 하셔서 대단위 시설투자와 거래처 확보를 위한 관측비 지출 등으로 손실을 보았다면 꼭 복식기장을 하셔서 손실 난 사실을 신고하셔야 하며 당기의 손실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결산금으로 공제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절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성실히 챙기는 것입니다.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세무사 박운중(031-872-6116)

(주)꽃샘종합식품은 정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보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선도하고, 고객님들의 건강과 중요한 삶에 공헌하겠다는 기업이념이 함께 합니다.

연혁

- 1965년 7월 전업양봉 개시
- 1987년 3월 현재 1공장 신축 준공
- 1992년 7월 (주)꽃샘종합식품 법인 설립
- 1997년 9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중부 영업소 개소
- 2004년 10월 ISO, 9001-14001 인증획득
- 2005년 7월 농촌사랑 1차추진동 자매결연 전북 임실 두월마을
- 2006년 9월 경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범농업체 선정
- 12월 우크라이나 빅토르안티로비치유센코 대통령 방문
- 2007년 5월 초현대식 위생시설과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춘 제 2공장 준공
- 6월 대통령초청, 우크라이나 방문 우호협력 조인식 체결

수훈·수상

- 1996년 10월 베트남 아시아 양봉학술대회전시 최우수상 수상
- 12월 농림부장관 표창 수상
- 2000년 2월 서울특별시시장 표창 수상
- 2001년 11월 대한민국적십자산업훈장 수훈
- 12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우수협력업체 표창 수상
- 2003년 6월 LG 유통으로부터 최우수업체 금상 수상
- 2004년 3월 국제시장 표창수상
- 2006년 2월 롯데마트로부터 감사패 수상
- 2007년 5월 상공회의소 주관 직장인체육대회 3년 연속우수
- 5월 농림부장관 표창 수상
- 6월 인재장학회 장학금기증 포천시장 감사패 수상



꽃샘은 자연과 인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주)꽃샘종합식품 KKOH SHAEM GENERAL FOOD CO.,LTD.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 TEL: 代 031)541-9921 FAX: 031)541-9933 http://www.ksfs.co.kr